

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Daily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2. 변경시행일 : 2022.07.22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**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**

정정 전	정정 후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④ <생략>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④ <현행과 같음>
제32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<생략> ② ~ ③ <생략>	제32조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<현행과 같음> ② ~ ③ <현행과 같음>
제39조(보수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3. <생략> ③ <생략>	제39조(보수) ① <현행과 같음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3. <현행과 같음> ③ <현행과 같음>

**[[간이]투자설명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**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정기갱신	-	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	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

<p>-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가. 투자대상</p> <p>나. 투자제한</p>		<p>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은 제외한다)</p> <p>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-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.....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.....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	<p>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은 제외한다)</p> <p>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- 동일종목 투자 나.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.....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.....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</p>	<p>21.42%</p>	<p>20.96%</p>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.....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.....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</p>
<p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<p>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</p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